

# 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## 1. 대상펀드

- ABL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[채권\_재간접형](H)

## 2. 발생일 : 2018년 03월 16일

## 3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

-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" 시행령 제 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

- 『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』에 따라 1개월 공시 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(원본액 50억 초과 등) 추가 공시

## 4. 소규모 펀드 처리 방안

- 소규모펀드 1년 공시 또는 1개월 공시가 1회 이루어진 후부터 『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』를 할 수 있음

-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 경우『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』이전까지는 소규모(1개월) 공시 이후 변동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 공시 소규모펀드임을 공시, 이후 원본액이 50억원이 초과되어 소규모에 해당되지 않거나, 그 반대의 경우 공시

- 소규모펀드 처리방안에는 해지(청산), 합병, 모자펀드 형태로의 전환 등이 있음.

- 운용사에서 처리방안을 결정시 공문으로 별도 안내

## 5. 공시일 : 2018년 05월 02일